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87호 2025. 3. 31.(월)

고시 · 공고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용당2지구, 신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3
-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5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2공구)” 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5. 3. 27.

목 포 시 장

1. 사 업 명 :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2공구)
2. 도로의 명칭 : 일반국도 제 77호선
3. 사업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일원
4. 사업 시행 기간 : 2021. 04. ~ 2027. 08.
5. 시 행 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_남중동)
6.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
7.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주민의견 제출방법
 - 가. 열람기간 : 2025. 3. 27. ~ 2025. 4. 14.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해상안전교량과), 목포시청(도시디자인과)
 - 다. 주민의견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함에 제출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91) 또는 건설사업관리단(☎061-246-13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램 의 견 서

공 고 명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 고시를 위한 주민 등 의견 청취	
사 업 명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2공구)	
사업장 위치	시점 :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종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사업시행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열람의견 제출자	성 명	
	주 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202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31.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동 조문 현행화(안 제2조제4항)
 -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변경
- 금고지정 심의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안 제5조의2 신설)

-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금고지정 절차 공개성·투명성 강화(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금고 지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 금고지정 평가기준 교부·열람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선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 “보고” 사항을 “사후통보”로 변경
(안 제15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24. 10. 4. 일부개정)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 ~ 2025. 4. 20.(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0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열람하게 할 수 있다”를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보고**”를 “**사후 통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④ ----- -----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사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 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7. 1.]

 -----사후통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31.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협력 및 시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제2조 : 조례제정의 목적과 지급대상의 범위
- 제3조~제5조 : 생활보조비의 지원 및 지급신청, 절차 등
- 제6조 : 생활보조비 지급권리의 발생 및 소멸
- 제7조~제10조 : 변동 신고 및 환수 조치, 지급 현황 관리 등

3. 제정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

-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 부패영향분석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6. 입법예고기간 : 2025. 3. 31. ~ 2025. 4. 21. [21일간]

7.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1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①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② 지급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 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서명한다.
2.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시장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지급현황 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생활보조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25년 1월부터 조례 공포하는 달까지의 기간 중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이내	
희생자	성명		등록기준지					
	성별							
	구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			결정일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계	
	성별							
	주소	(☎)						
신청인	성명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성별							
	주소	(☎)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주소 : ○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확인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희 생 자	성 명		등록기준지			
	구 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			결정일	
	성 별					
지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계	
	주 소	(☎)				
	성 별					
신 청 인	성 명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주 소	(☎)				
	성 별					
비 대 상 결 정 사유						

상기인은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장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희 생 자	성 명		등록기준지			
	구 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			결정일	
	성 별					
지 급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와 의 관계	
	주 소	(☎)				
	성 별					
신 고 인	성 명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주 소	(☎)				
	성 별					
신고사유	(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					

위와 같이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illegible]

【붙임2】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목 포 시 장

1. 공고대상 : 4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3. 31. ~ 2025. 4. 14. (15일간)
3. 공고장소 : 목포시 시보,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목포시 용당2·신촌1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5.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061-270-3417, 8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 끝.

[붙임] 공시송달조서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조서

번호	사업지구	압류일자	토지소유자		토지소재지	송달사유
			성명	주소		
1	신촌1지구	2025.3.11.	김*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다길 **, ***호	목포시 용당동 ***-***, ***-***	폐문부재
2	신촌1지구	2025.3.11.	민*현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 **.*	목포시 산정동 ****-***	폐문부재
3	신촌1지구	2025.3.11.	박*정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번길 *-**, ***호	목포시 용당동 ***-***	폐문부재
4	신촌1지구	2025.3.11.	이*충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번길 *	목포시 산정동 ****-***	폐문부재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31.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도시숲 등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신설 (안 제4조의2)
-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신설 (안 제4조의3)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내용 수정 (안 제5조)
- 부담금의 징수 관련 규정 수정 (안 제23조)

○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정비

- 의견청취 및 수당·여비 조항 신설 (안 제5조의6, 제5조의7)

※시행규칙의 제7조, 제8조 편입

- 훼손 가로수 복구대장 작성 신설, 가로수 관리대장 작성 수정(안 제26)

※시행규칙 제11조 편입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 제12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 ~ 2025. 4. 20.(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0일까지 목포시장(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전남 목포시 수문로32(남교동) 목포시청 공원녹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4),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공원녹지과(☎ 061-270-3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목포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이하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3.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3(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라””를 ““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명”을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를 삭제한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제5조의3제1항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을 삭제한다.

제5조의6을 제5조의8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의6)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하며,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7(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규칙”을 “별표 6”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이 병해충 방제 및”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단 중 “승인여부를 통보”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승인여부를 통보”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비용부담금을 징수”를 “비용부담금 징수 또는 과태료를 부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을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을 “영 제11조 별표3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가로수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을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로 한다.

①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훼손 가로수 복구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2]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제8조제4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cm이상 근원직경 10cm이상	.현지 여건 및 식재방법, 수종 등에 따라 식재 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목도 식재할 수 있음
②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직경 8cm이상	
③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8cm이상 근원직경 6cm이상	

[별표 3]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7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보호틀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달리 할 수 있으며, 보호덮개도 입지 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②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별표 4]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4조 및 제15조 관련)

수 병	가해수종	가해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 디프제 등 살포	○ 1화기: 6월 상순 ○ 2화기: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등 살포	○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메프유제, 디프제 등 살포	○ 1화기: 5월 초중순 ○ 2화기: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등 살포	○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록스 10%수화제 수관살포 ○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 수관살포: 5월 하순 ~ 6월 초순 ○ 나무주사: 6 ~ 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등 살포	○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등)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각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 메치온 유제, 이미다크로프리드 액제 등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 ~ 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5]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21조 및 제22조 관련)

피 해 발생의 경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수목의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수관의 2β 이상 훼손)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 공사 설계비 전액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수관의 2β 이하, 1β 이상 훼손)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 공사 설계비의 30% 이상 70% 이하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수관의 1β 이하 훼손)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 공사 설계비의 30% 이하
피 해 이외의 원 인 발생의 경 우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원인자가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도급 공사 설계비 예치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 발생의 경우로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 공사 설계비 부담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원인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도급 공사 설계비 부담하고 제거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원인자가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 공사 설계비 + 제거비 부담
○ 도급 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 목 비 : 물가정보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 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하자책임 담보기간 : 2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조정식재)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6]

가지치기·옹서심기 대상 및 방법 (제13조 관련)

1. 가지치기

1. 대 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이나 지하고 내의 줄기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2. 시기 및 횟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 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수종별 기본수형을 유지하여 가지치기 1) 원추형 : 은행나무, 느티나무, 히말라야시다 등 3) 원정형 : 버즘나무, 목백합 등 3) 평정형 :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포제, 코울타르 등으로 도포

2. 옮겨심기

1. 대 상	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가 필요한 경우(가지치기만으로 효과가 미흡할 경우) 나. 도로확장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다. 도로점사용 허가를 득한 경우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방 법	가. 굴 취 1) 수목 굴취는 인력굴취를 원칙으로 하며 기계 굴취해야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2)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전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4)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5)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과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운 반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2)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다. 수목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를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잔토처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방 법

2) 식 재

-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 나)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라)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 마)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 바)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한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피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 사) 수목얹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 아)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 ### 3) 지주목세우기
-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 나)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 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 ### 4) 관 수
-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 ### 5) 모양잡기
- 수목 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가)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옮겨심기전의 수형을 잘 살피서 다듬는다.

[] <삭 제>

가로수 가지치기(옹제심기) 승인신청서

가로수 가지치기(옹제심기) 승인신청서 (제21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가지치기(옹제심기) 내역		소 재 지				
		노 선 명	구 간	수 종	규 격	수 량
			시점: 종점:			
사 유						
작업방법						
가지치기 유형 및 주의사항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						

가로수 가지치기(옹거심기) 승인서

가로수 가지치기(옹거심기) 승인서 (제21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가지치기(옹거심기) 내역		소 재 지				
		노 선 명	구 간	수 종	규 격	수 량
			시점: 종점:			
사 유						
작업방법						
가지치기 유형 및 주의사항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승인조건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훼손 가로수 복구대장 (제26조제1항 관련)

[illegible]

가로수 관리대장 (제26조제3항 관련)

도 로 노선명					구 간	시 점						
						종 점						
도 로 종 류	종 류				도로폭	차 도						
	좌 우 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 로 수 조 성 현 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 업 비					시 공 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 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 리 내 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목포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이하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2.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u> <u>3.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u>
<u><신 설></u>	<u>제4조의3(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u> <u>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u>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시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요청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① -----

----- “위원회”
라 -----.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삭 제>

한 사항

3.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신설>

3. (현행과 같음)

② -----
7명 -----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

-----.

제5조의3(위원의 임기) ① -----
----- 하되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6(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7(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제5조의6(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숲 등 조성·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3조 (가지치기·옹져심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 공간의 확보, 전기·통신 시설물의 안전,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옹져심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치기·이식을 실시한다.

②·③ (생략)

제14조 (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병해충 방제 및 별표 4의 가로수 주요 충해 방제법에 따라 가로수에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8(간사) -----

----- 업무팀장-----.

제12조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

각 호와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가지치기·옹져심기) ① ---

----. -----

-----별표 6-----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병해충의 방제) -----

-----별표 4-----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21조 (승인절차)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숲
등 수목을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도시숲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용부담) ① 시장은 도시숲
등 수목과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3조 (부담금의 징수) ① (생략)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제21조 (승인절차) ① 법 제12조제3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내에 원인자에게 별지 제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승인여부를 통
보-----

-----.

제22조 (비용부담) ① -----

----- 비용부담금 징
수 또는 과태료를 부과-----.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 (부담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 (관리대장) <신 설>

① (생 략)

② 가로수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
영 제11조 별표3 규정에 의하여 ---
-----.

제26조 (관리대장) ①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훼손 가로수 복구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

-----.